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892
----------	------

발의년월일 : 2025년 6월 19일
발의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5. 5. 26. 김인제 의원이 발의(찬성자 16명)하여 2025. 5. 29.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2호),
2025. 5. 26. 성흠제 의원이 발의(찬성자 14명)하여 2025. 5. 29.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0호),
2025. 5. 26. 김용호 의원이 발의(찬성자 25명)하여 2025. 5. 29.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7호),
2025. 5. 26. 최호정 의원 외 29명이 발의하여 2025. 5. 29.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이들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2762호, 제2780호, 제2787호, 그리고 제2792호 개

정안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 이들 개정안은 모두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나, 일부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조례 체계상 관련 규정 간 중복 및 혼선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
- 나. 지하안전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6조제1항).
- 다.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 라. 공동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토록 함(안 제12조제3항).
- 마.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포함토록 함(안 제12조의2).
- 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사.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한다.

제12조 제목“(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을 “(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를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을 “조사에서 또는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반안전을 위한 기술인의 배치 등)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1. 특급기술인: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2. 고급기술인: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제13조의 제목 “(공동조사 대행 등)”을 “(공동조사 주기 및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를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등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관련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 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12조(<u>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u>) ① 시장은 도로(이하 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p>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u>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u>) ① ----- ----- ----- ----- -----</p>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조사에서 또는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지반안전을 위한 기술인의 배치 등)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1. 특급기술인: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

제13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략)

<신 설>

사

2. 고급기술인: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제13조(공동조사 주기 및 대행 등) ① -----

-----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4조(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등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관련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 (생략)

<부칙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